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 법안개요

법안명 (의안번호)	제안 일자	대표 발의	주요내용
자본시장과금융 투자사업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502)	2013. 6. 14.	김재경 (새)	<p>가.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및 과징금 부과근거를 신설함(안 제178조의2, 제429조의2 신설).</p> <p>1) 상장증권, 장내파생상품 또는 이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매매 등 여부 또는 매매 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함.</p> <p>2) 거래의 체결의사 없이 주문을 과다하게 제출하는 등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p> <p>3) 증권 또는 파생상품과 그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상장된 경우로서 가격 또는 권리행사나 조건성취 여부 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p> <p>4)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 이득액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p> <p>나. 벌금 또는 몰수·추징의 필요적 병과 근거를 신설함(안 제447조제1항, 제447조의2 신설).</p> <p>1) 현행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징역형을 처할 경우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함.</p> <p>2)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을 하도록 함.</p> <p>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업무에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근거를 신설함(안 제402조제1항제4호 신설).</p> <p>라. 금융위원회는 체납 과징금의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4조제4항 신설).</p>

### 2) 검토의견 : 입법 찬성

### 3) 주요 검토내용

- 2013. 12.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 구기성)의 의견에 대체로 찬성함.

###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쟁팀)

## 2.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 1) 법안개요

법안명 (의안번호)	제안 일자	대표 발의	주요내용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1900784)	2012. 7. 20.	정부	○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정부는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중, 장기정책목 표 및 기본방향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 서비스 산업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활성화 ○ 서비스산업발전에 필요한 지원제도 근거 마련

###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 3) 주요 검토내용

- 이 법률안은 제18대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하였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 임기만으로 폐기된 것을 다시 제출한 것이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와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법률안 제1조 참조)
- 그러나 이와 같은 목적 규정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현재 시행중인 ‘산업발전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 (산업발전법 제1조는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무엇보다 가장 문제인 것은 제2조 서비스산업의 정의규정에서 ‘의료’를 삭제하고, 서비스산업의 정의를 전부 포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게 하였다는 점임. 그리고 이와 같은 정의 규정의 포괄위임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기존의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있음. 기획재정부 회

의록을 살펴보아도 기획재정부장관의 해명에 설득력이 부족함.

- 결국 본 법률안으로 인하여 의료민영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우려가 심히 중대하고, 기존의 산업발전법으로도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법안은 입법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됨.

####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 법안개요

법안명 (의안번호)	제안 일자	대표 발의	주요내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1207)	2014. 7. 17.	나성린 (새)	가. 임대차시장의 불안을 완화하고자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하인 경우는 한시적으로 3년간('14~'16년 소득분) 비과세하고 '17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 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택임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하여 주거용 건물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근로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자 하는 것임

#### 2) 검토의견 : 일부 찬성 / 일부 반대

#### 3) 주요 검토내용

- 주택임대소득과세는 과세의 형평성 및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필수적인 사항임. 따라서 그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시적 과세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이렇듯 불평등한 비과세 또는 과세유예 행정은 성실한 납세자들에 대한 조세저항 및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소규모임차인에 세부담완화라는 입법목적 또한 다음의 2가지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찬성할 수 없음. 첫째, 다른 소득에 대한 고려없이 연간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면 소규모임차인으로 의제하는 잘못된 전제에 서 있음. 둘째, 연간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경우 과세혜택이 절실한 소규모임차인이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마치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전제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음.

- 법인세 소득세 30%감면은 준공공임대사업자 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같은 시기 양도소득세까지 100% 감면해준다는 것은 부적절함.
- 조세의 핵심은 실질과세와 형평과세임. 분명한 소득이 있고, 현재도 법에 의해 납세의 의무가 있는 사안에 대해 법대로 집행을 하지 않은 그간의 관행은 잘못된 것임. 정부 또한 스스로 이러한 관행을 바로 잡고자 했다가 단순히 부동산가격 부양에 좋지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실질과세와 형평과세 원칙을 훼손하려는 잘못된 접근법을 보이고 있음. 장기적으로 조세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임대소득과세 현실화는 꼭 필요한 사안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팀)**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 (의안번호)	제안 일자	대표 발의	주요내용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30)	2012. 9. 27.	이현재 (새)	별표 2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추가함(안 별표 2 제67호 신설).

**2) 검토의견 : 조건부 찬성**

**3) 주요 검토내용**

-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구조고도화를 통한 성장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기금설치 목적은 일응 타당한 면이 있음.
- 다만,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구조고도화를 위해서 단순히 새로운 기금을 설치해서 재정 지원을 하면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할 필요할 것으로 보임. 즉, 현재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은 단순히 재정지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 및 소비자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합리화 등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미비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임. 따라서 이러한 기본정책과 관련한 구체적 대안 없이 단순히 기금을 마련해 관련 재정을 강화한다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임.

- 소상공인들을 위한 기금마련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이 마련될 경우 그 기금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관련 정책이 먼저 확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제시와 함께 본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팀)

5.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 (의안번호)	제안 일자	대표 발의	주요내용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982)	2013. 7. 16.	김재원 (새)	동북아시아에서의 크루즈 시장이 확대되고, 크루즈 여객과 선박으로 인한 높은 부가가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적 크루즈의 국내 기항을 더욱 확대하고, 국적 크루즈가 운항 경쟁력을 갖추고 크루즈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많은 고용과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크루즈 인프라의 구축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 방안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 국정과제 17번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와 81번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의 한 내용으로서 크루즈 산업 육성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본 법률안은 위와 같은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국내 크루즈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 됨.
- 본 법률안은 1) 크루즈의 정의, 2)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외국적 크루즈 유치 확대를 위한 보조, 4) 크루즈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각 법률의 특례 규정, 5) 크루즈 전문인력의 양성, 6) 크루즈산업 협회의 설립, 7) 크루즈산업을 위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위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4) 크루즈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 법률의 특례 중 「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를 규정하여, 선상 카지노업을 허가하였다는 점임.
- 그 외에도 항만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에 드는 비용은 그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나 본 법률안은 이를 배제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적 크루즈 또는 외국적 크루즈 사업자에게 국공유 재산을 수익계약의 방식으로 또는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 국적 크루즈 모항 기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과 물품을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본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와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세 감면 혜택도 부여하고 있음.
- 더 나아가 본 법률안은 외국적 크루즈 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 크루즈사업자에 예산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외국 크루즈 사업자에게 오히려 국가 예산을 이용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
- 결국 본 법률안은 크루즈 산업 육성 목적이라는 미명 아래, 카지노사업을 허가하고, 공유재산 및 국가예산을 공여하며, 조세감면혜택까지 부여하는 법안이라고 할 것임.
- 이는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고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될 것인지 정밀한 검토 없이 사행성 사업을 조장하는 것에 불과함.

####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입법감시TF

## 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 법안개요

법안명 (의안번호)	제안 일자	대표 발의	주요내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2257)	2012. 10.22.	정부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그 계획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간주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하천 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관리하는 자에게 토지의 점용료와 하천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 3) 주요 검토내용

- 박근혜 정부는 ‘해양 신성장동력 창출’을 국정과제 중 하나(인수위 국정과제 13번)로 정하고, 해양신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마리나 시설 확충 등 해양관광 기반을 확대하고, 산업연계형 R&D 지원을 통한 성과 확산을 도모하기로 밝힌 바 있고,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13. 8. 29. 마리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인천, 군산, 여수, 창원 등 전국 6개 지역에 국가 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조사 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음. 마리나항만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로 23억여원이 투입될 예정임.
- 본 개정안은 위와 같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1)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그 계획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간주하고, 2) 마리나항만시설에 ‘주거시설’을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3) 하천 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관리하는 자에게 토지의 점용료와 하천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1)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법적 근거인 공유수면매립법 등은 매립 결정이 행정부의 임의적 판단에 의존하고, 매립 완료 후에도 용도 변경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반환경적이라는 비판이 거세고, 이에 타 법률에 의한 의제 조항들을 삭제하여 공유수면매립시 환경적 측면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의제조항은 마리나 항만 조성이라는 산업적 이익을 환경보존의 가치보다 우위에 둔 것으로서 적절치 않음.

- 또한 2) 본 개정안의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 취지와는 달리 항만시설에 주거시설이 포함되면서 선부른 부동산 거품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 본 법 제2조 제4호에 의해 주거시설 건설이 마리나산업단지 조성에 해당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적용에 따라 산업단지로서의 조세 감면과 같은 특혜를 받게 되는데 이는 관광진흥법에도 없는 특혜로서 부당한 측면이 있는 점, 마리나 산업은 고급해양레저스포츠로서 마리나항만지역 내에 주거시설을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자들은 일정 정도 이상의 재력을 보유한 자로 추정되는 가운데 주거시설 특혜는 오히려 부자를 위한 특혜로 변질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거시설을 마리나항만시설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끝으로 3)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민간투자자가 기존의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혜택에 더하여 하천법상의 토지 점용료와 하천사용료도 감면을 받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음.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입법감시TF

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 (의안번호)	제안 일자	대표 발의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890)	2013. 12. 30.	정부	<p>가.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의 완화(안 제8조의3)</p> <p>1) 글로벌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p> <p>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필요적 출자비율을 현행 10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완화함.</p> <p>3) 중소기업 개발사업자들이 특수목적법인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됨.</p> <p>나.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적합통보(안 제23조의3)</p> <p>1)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현행 사전심사제는 카지노업 허가 남발의 우려가 있음.</p> <p>2)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공모</p>



		<p>를 통한 허가의 적합통보 제도로 전환하고, 허가의 적합 통보를 위한 공모의 방법과 적합통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p> <p>3)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서 공모를 통한 적합통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p> <p>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 특례의 조정(안 제27조)</p> <p>1)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의 폐기물 및 도로관리 등과 관련한 도시관리 업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경제자유구역개발과 투자유치 등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문제가 있음.</p> <p>2) 현재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관할 경제자유구역 내의 폐기물, 하수도, 공원, 옥외 광고, 도로 관리 등 경제자유구역 운영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도시관리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도록 함.</p> <p>3) 경제자유구역 내 도시관리 업무의 적절한 분담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주요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p> <p>라. 경제자유구역 통계의 관리(안 제28조의4 신설)</p> <p>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장에게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p>
--	--	---

##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 3) 주요 검토내용

#### ○ 개발사업자 자격요건 완화

- 개정안은 현행 법령상의 개발사업시행 대상자 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때,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갖춘 둘 이상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100% 출자하여야 하던 것을 50%를 초과하여 출자하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하여 글로벌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현행 개발사업자 자격요건이 대기업 중심으로 엄격하여 건설한 민간 중소자본의 사업참여가 제약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개발사업자들이 특수목적법인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검토보고서 인용)

- 그러나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개발사업자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투자를 활성화하려고 하기 전에 “왜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이 부진한지” 그 원인부터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sup>1)</sup>
- 또한 개발사업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중견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나, 이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자격요건을 완화한다고 하여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고, 오히려 보유 자본이 적은 중견기업이 경쟁적으로 개발사업에 참여한 후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업실패에 따른 매몰비용의 증가와 해당 사업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피해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음.

○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사전심사방식 변경 등

-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에 따르면, 개정안(안 제23조의3제8항부터 제14항까지)은 사전심사 청구제도가 현재 개별 민원처리방식으로 이뤄짐으로 인해 카지노 난립 가능성과 정책적 판단여지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고려에 따라, 사전심사를 받을 자를 공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임. 그리고 개정안의 ‘공모방식’이란 카지노업 허가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당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허가 대상지역과 허가 업체의 수 등을 정한 후 사전심사를 받을 자를 공모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심사 신청이 이뤄진 경우 허가 적합 여부를 통보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임. 다만, 개정안에서 본허가 이전에 사전허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기존의 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과 별도로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허가 대상지역과 업체의 수를 정부에서 모두 정하는 방식은 아님. (검토보고서 인용)
- 위 개정안은 크루즈산업육성법과 함께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카지노 사업을 통하여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국내에서의 지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가 적절한 것인지 의문임.
-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서울에 3개점, 부산에 2개점, 인천 1개점, 강원 1개점, 대구 1개점, 제주 8개점 총 16개점이 개설되어 있어 이미 충분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카지노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는 타당성이 없음. 또한 관광인프라 개발보다는 현실적으로 현금 수익 창출이 수월한 카지노사업을 육성하는 것이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하는 일인지 관광진흥정책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함.
- 카지노사업과 같은 사행성 사업 조장 분위기는 최근 한국마사회의 용산실내화상경마장 추진 움직임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난 바와 같음.
- 특히 선상카지노와 더불어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카지노가 난립하는 경우 수익성 악화에 따라 카지노기업이 내국인 출입 허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고 하여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발표(2008년)에 따른 한국의 도박 유병율(CPGI척도 기준)은 9.5% 수준으로서 영국(2010) 1.9%, 호주(2010) 2.4%, 뉴질랜드(2009) 1.7%, 미국

1) 규제 완화 및 실시계획 간소화 등으로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여 전체 98개 지구 중 52개 지구의 개발이 완료 또는 진행 중임. 다만, 전체 지정 면적 429km<sup>2</sup>의 56%인 242km<sup>2</sup>가 개발에 미착수  
 \* 개발현황 : (완료) 19개 지구, (진행) 33개 지구, (미개발지) 46개 지구

(2011) 3.2%, 캐나다(2008) 1.4% 등 외국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편이이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또한 공모를 통해 사전심사를 하여 허가 여부에 대해 적합통보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본허가 절차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카지노 난립을 막기 위해 사전심사를 한다면 필수적 절차로 규정하지 않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움.

####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 법안개요

법안명 (의안번호)	제안 일자	대표 발의	주요내용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870)	2012. 9.19.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상황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li> <li>•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전매행위가 제한되던 것을,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매행위제한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일정기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li> <li>• 주택공급질서 유지를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주택 중 수도권 지역의 공공택지·민간택지,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등과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li> </ul>

####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 3) 주요 검토내용

-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집값상승을 초래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는 정책이다. 19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평당 분양가가 1998년 512만원에서 2006년 1546만원으로 3배 이상 상승했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적 가수요자들만이 분양시장에 참가하게 되어 무주택자들이 생활의 기본수단인 주택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아파트분양시장의 기본적 기능이 상실되었다. 현재 주택가격과 주택거래량이 하락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택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유엔 인간거주정착센터(UN HABITAT)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정 PIR(연소득대비 주택가격의 비율)은 3-5배이다. 우리나라의 PIR은 계속 상승하여 현재 7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 3분위에 해당하는 주택, 연소득 5, 6분위를 기준으로 할 때

11.8배, 10.3배이다. 이로 인해 집값 상승의 전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경기침체로 소득이 정체되어 있는 실수요자들은 큰 빚을 내서 집을 사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등 대부분의 주요 부동산 규제를 폐지하면서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장은 예전 분양가 자율화 시기처럼 높은 분양가로 이익을 얻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강남재건축 등 일부 고분양가로도 분양이 가능한 지역이 있어 주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가 주변시세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임은 경험적으로 분명하다. 경기는 순환한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 경기 침체기에서 확장기로 접어들 때 분양가가 급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때 가서 부랴부랴 분양가를 규제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으며 실령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부활한다고 해도 사후 약방문이 될 것이 분명하다.
- 원칙적으로 주택 전매를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전매행위제한주택 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부분도 문제이다. 결국 부동산 투기 세력을 통해 주택 가격 상승을 꾀하고 그 차익 실현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적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으로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내용이므로 반대한다.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9.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1) 법안개요

법안명 (의안번호)	제안 일자	대표 발의	주요내용
재건축초과 이익환수법 폐지 법률안 (1909807)	2014. 3. 20.	신동우 (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 부과 폐지</li> </ul>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 2014년 12월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여 그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를 해오지 않고 있었다. 위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법안의 목적은 현행보다 강남권 재건축에 혜택을 더 가산하여 빨리 진행시키고

이를 통해 주택경기를 부양시키려는 것이다.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3천만원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서울 강남권 등 투기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특정 재건축단지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재건축 구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는 특정 재건축단지를 대상으로 한 특혜성 정책이라는 점, 부동산 경기의 안정화 기조를 깨뜨리는 부동산 경기의 인위적 부양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제도 폐지시 도시재생의 기본 방향과 관련하여 투기 억제 및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재생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려던 본래의 목적을 실행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서 반대한다.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 (의안번호)	제안 일자	대표 발의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103)	2014. 4. 7.	이노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밀억제권역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을 폐지하여 주택 재건축사업 조합원의 경우에도 기존에 소유한 주택 수 만큼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li> </ul>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 문제점
  - 개정안은 투기 예방 차원에서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전국적으로 한 곳도 없음.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 강남권도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의 경우 소유주택 수만큼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임.
  -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취득·등록세 영구인하, 다주택양도세 종과 폐지 등 투기를 억제할 제도를 폐지하였고,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효과와 결합해 쉽게 국지적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음. 현재의 시장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재건축사업의 1가구 1주택 원칙을 폐지한다면 주택시장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위험이 있음. 특히, 자금 동원력이 있는 투자자에 의해 재건축사업 예정 또는 시행중인 주

택에 대한 대규모 투기적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정비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것은 사업성이 악화되고 집단적 의사합치의 어려움에서 기인하는데, 부동산 시장이 장기 하향 안정화 추세에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사업성을 증대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
- 현행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다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공급을 해주지 않지만 그 대신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로 현금으로 청산해 주고 있으므로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음

####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 법안개요

법안명 (의안번호)	제안 일자	대표 발의	주요내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233)	2013. 5.31.	정부	가.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내용 세분화(안 제10조제3항) 나.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안 제21조 및 제90조) 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개선(안 제27조의2) 라. 전문의 수련 중인 의사 등의 겸직금지 규정 마련(안 제77조제4항) 마. 과태료, 업무정지의 중복 제재 개선(안 제92조제3항)

#### 2) 검토의견 : 일부 찬성 / 일부 반대

#### 3) 주요 검토내용

##### <찬성 내용>

- 본 개정안 중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을 명시하여 과거 의료인이 부당하게 의료기록의 열람을 거부하는 문제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개정안 찬성함.

## <반대 내용>

- 본 개정안 중 보험회사로 하여금 외국인환자의 유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부분은 개정에 반대함. (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의견과 같은 입장임을 밝힘)
- 보험회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알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보험회사와 병원이 직접 계약을 맺고 이를 통해 보험회사가 의료행위에 대하여 관여·통제하고, 영리적 의료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러한 사유로 그동안 보험회사의 환자유치알선 행위 및 직접계약이 금지되었으나, 본 개정안은 이를 허용하는 법안임. 이는 결국 영리목적 의료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영리목적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의 취지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것으로 보임.
- 의료기관과 보험업의 결합은 환자 정보 유출, 보험업의 이익증대, 병원의 영리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보험회사의 환자 유치·알선을 허용하였던 외국에서조차 이를 철회하려는 논의가 진행중임.
- 한국은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이나,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어 의료영리화가 제한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영리기업인 보험업이 의료기관과 결합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됨. 의료기관-보험회사의 직접계약 및 보험회사의 환자 유치·알선행위 허용은 현재 미국의 상업적 의료제도가 현재와 같이 민영화되었던 첫 단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의료법 개정안은 전반적인 보건의료제도의 상업화와 민영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임.
- 비록 본 개정안이 유치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매우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임. 즉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 또한 영리목적으로 이행되는 경우, 이 역시 의료법의 근본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의료기관의 영리목적 의료행위를 초래할 것임.
- 또한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법 등에서의 처음에는 외국인에 한정되어 허용되었던 내용이 내국인까지 확장되었던 경우가 흔함. 즉 처음에는 보험회사의 환자알선 유치행위가 외국인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내환자에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큼.
- 이에 더하여 본 의료법 개정안은 문화관광부가 같은 날 입법예고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3.1.] [대통령령 제24884호, 2013.11.29., 일부개정]”과 연동되어 있음. 본 시행령은 ‘의료관광호텔업’이라는 관광진흥법 상의 숙박업을 신설하고 일정 수준의 해외환자 유치 실적을 갖춘 의료기관도 외국인환자를 위한 의료관광호텔을 세울 수 있

도록 함. 사실상 자본력을 갖춘 대형병원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호텔 시설을 허용한 셈임. 이처럼 의료기관이 자신의 고유목적과 충돌할 수 있는 위락시설인 호텔업을 개설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고유목적과 충돌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반대함.

- 더구나 병원이 진료 이외의 부대사업인 의료호텔업 등에 치중하게 되면서, 본연의 임무인 진료를 등한시 할 우려가 큼. 또한 의료호텔업은 ‘피부미용’ 같은 비보험진료나 ‘건강검진’ 같은 필수의료 외의 진료 확대를 가져올 수 있어 의료공급의 왜곡을 더욱 부추길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수치료, 아로마 치료 등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유사 의료행위가 의료호텔업에 부수되어 행해질 수 있어 불필요한 의료비의 증가와 의료공급의 부정적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음.
- 특히 ‘의료호텔업’은 내국인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앞서 밝힌 의료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보험업이 ‘의료호텔업’을 개설하게 되면 사실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환자의 유치알선이 가능해 지는 것이며, 이는 전면적인 보험-병원 카르텔 허용의 효과가 나타남.
- 한국은 현재도 의료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이 조차도 빅 5병원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거대병원의 숙박업인 ‘의료호텔업’이 허용된다면 의료 지역 불균등, 의료기관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심해질 것임.
- 따라서 의료기관의 영리목적 의료행위를 초래하고 보험업의 이익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함.

####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입법감시TF

##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1) 법안개요

법안명 (의안번호)	제안 일자	대표 발의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903)	2012. 12.03.	유재중 (새)	가.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함(안 제2조제5호). 나. 수급권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증가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자에 대해 급여의 일부를 실시하고 있는 이행급여 특례 적용의



			<p>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이 급여의 일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상을 차상위계층에서 차상위계층 등으로 확대함(안 제7조제3항).</p> <p>다.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기관인 자활연수원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5).</p> <p>라. 자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차상위자에 대하여 자활급여 신청, 확인조사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수령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3조의2제1항).</p> <p>마. 급여 신청인에 대한 급여의 결정내용 통지 기한을, 금융정보 조회 등 급여결정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30일로 변경함(안 제26조제4항).</p> <p>바. 벌칙의 요건이 되는 종교상의 행위 강제를 종교의식을 행하게 하거나 종교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구체화함(안 제50조).</p>
--	--	--	--

## 2) 검토의견 : 일부반대 / 일부찬성

### 3) 주요 검토내용

#### 가)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안 제2조 제5호)- 찬성

- 부양의식에 대한 변화를 고려하여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아닌 경우까지 부양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부양의무자를 1촌의 직계혈족으로 한정함.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하여 보다 광범위한 국민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 나) 보장기관의 재량의 범위(안 제7조 제3항)- 반대

- 개정안 제7조 제3항은 ‘차상위자’를 ‘차상위자 등’으로 수정함으로써 보장기관이 차상위자 외의 경우에도 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도록 변경함. 보장기관이 수급권자나 차상위자 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재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급여에 대하여도 재량권을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경우, 수급권자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다) 급여의 결정내용 통지 기한 연장(안 제26조제4항)- 반대

- 급여의 결정내용 통지 기한을 14일에서 30일로,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함. 그러나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는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다 못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경우도 많음. 기초생활급여 수급권 유무는 신속히 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제26조 제4항 단서에서는 이미 ‘1.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입법감시TF**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 (의안번호)	제안 일자	대표 발의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001)	2014. 6. 26.	최봉홍 (새)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 등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한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거나 이사장에게 해당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함.

**2) 검토의견: 수정 입법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또는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보험급여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행위를 적발하도록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여 부정수급자 적발에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임.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정수급행위를 적발하려는 위 법률안은 그 취지가 타당해보임.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기금고갈우려가 있다는 기사가 보도(2014. 7. 14. 헤럴드경제)되는 현실에 비추어 위 취지가 타당해보임.

-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 2는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항 '신고한 사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 및 근로복지공단 임직원도 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 그러므로 위 법률안은 공무원 및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부정수급자 적발행위에 대해 이종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결과가 됨. 이는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에 크게 역행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부정수급자를 적발한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에게 포상, 인사상 우대 등을 조치를 하거나 이사장에게 해당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성과급 등 별도의 금전적 보상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필요 있음.

4) 담당 검토 위원회: 민번 노동위원회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 (의안번호)	제안 일자	대표 발의	주요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886)	2013. 2. 27.	이재영 (새)	<p>현행법은 수급사업자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수급사업자에 대하여는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p> <p>그런데 중소기업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대기업 등에 비하여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될 때 받은 각종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매출액 등도 중소기업일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러한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일부 부여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음</p> <p>이에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에 있어서는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 중 연간매출액 규모 등이 상대적으로 작은 중견기업에게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을 보호·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1항 신설)</p>

2) 검토의견 : 입법 찬성

3) 주요 검토내용

- 정문위원회 검토보고서(전문위원 임익상) 의견에 동의함. 특히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보호 조항은 대금지급보장 부분 뿐만 아니라 전 조항이 확대적용되어야 할 것임.

구분	이재영의원안	수정의견
수급사업자의 범위	연간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직전 3년간 연간매출액의 평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적용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도급법 제13조(대금지급)</li> <li>• 제13조 위반시 벌칙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5조(시정조치), 제25조의3(과징금), 제30조(벌금)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도급법 전 조항</li> </ul>
중견기업의 수급사업자 인정 요건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더 많은 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소속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매출액, 상시고용종업원 수와 무관하게 인정
		다른 중견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위탁을 주는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더 많은 경우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공정경쟁팀)

15.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안

1) 법안개요

법안명 (의안번호)	제안 일자	대표 발의	주요내용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안(10603)	2014. 5. 14.	강석호 (새)	토지이용 인·허가 통합 간소화 사전정보제공, 사전심의제도 도입, 인·허가 협의기간·보완횟수 명시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3) 주요 검토내용

- 이 법률안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으로 각 개별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 간소화한다는 명분에서 마련한 법안이다. 특히 안 제9조는 토지이용 인·허가의 신청을 위한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식 인·허가와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사전심의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다.
- 위 법률안은 우리나라와 같이 가용 토지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개발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하고 있는 토지 이용 및 개발의 인·허가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다.
- 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면적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에, 모든 국민이 생산 및 생활의 기반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토지재산권의 제한에 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인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89헌마 214 등 참조).
- 기존의 위 개별 법률들이 두고 있는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인·허가 절차는 토지의 이러한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 및 개발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 국토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세부운용계획을 세워 토지의 이용 및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위 개별 법률들은 이미 ‘인·허가 의제 제도’라는 토지 이용 등의 인·허가 간소화 절차를 마련하여 인·허가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럼에도 굳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토지이용 인·허가의 신청을 위한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전심의제도 등을 통하여 정식 인·허가와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지나치게 간소화하여야 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이로 인해 토지의 인·허가가 쉽게 이루어져 토지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을 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다.
- 따라서 본 특별법의 제정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

####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 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 법안개요

법안명 (의안번호)	제안 일자	대표 발의	주요내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995)	2014. 4. 2.	정부	가. 원격의료 대상의 확대(안 제34조 제1항) 나. 원격의료 실시기관의 신고(안 제34조 제2항 및 제5항 제2호) 다. 원격의료 대상 환자 및 의료기관(안 제34조 제3항 및 제4항) 라.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안 제34조제5항) 마.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실시(안 부칙 제2조)

##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근간을 뒤흔들면서 본격적인 의료영리화·의료상업화의 출발점이 될 것임.
- 원격의료는 안전성이 전혀 입증된 바 없고 그 책임성도 담보할 수 없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고 오진의 가능성과 진단 누락 및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
- 우리나라와 같이 1일 생활권인 나라에서는 오히려 대면 진료 활성화를 위한 방문 진료 확대가 필요하다며 의료인들조차 반대하고 있는 정책으로 통과시켜선 안되는 법안임.
- 위와 같은 의료의 질 하락, 의료사고 발생 등 환자의 안전 위협뿐만 아니라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현상을 가속화시켜 동네의원의 몰락과 의료전달체계도 왜곡시킬 것임.
- 원격의료는 재벌기업들이 유헬스 산업화라고 부르는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의 선결조건으로 재벌기업과 대형병원들의 수익 창출에는 기여할지 모르나 특히 이번 안에 장비도입 등의 예산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원격의료장비 구축과 통신비 등으로 인해 의료비 폭등을 가져와 오히려 환자들의 부담은 더 가중될 것임.
- 또한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하게 아직까지 도서벽지 지역 중에서 광대역망이 구축되지 않은 소규모 마을이 많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런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일수록 원격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를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나아가 원격의료를 통해 개인의 건강정보가 수집·가공될 수 있고, 이런 정보가 민간보험회사 등의 이윤추구 목적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함.

## 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 법안개요

법안명 (의안번호)	제안 일자	대표 발의	주요내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668)	2014. 3. 10.	김희국 (새)	국제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경우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안 제56조 제2항 제10호 단서)

###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법은 의료광고의 경우 의료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만이 할 수 있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등 일정한 내용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방송 등의 매체를 사용해서는 할 수 없는 일정한 제약이 있음.
- 위 개정안은 외국인 유치를 위한 과잉 광고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현행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국내 의료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더구나 위 개정안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반대하는 법안으로서 의료의 공공성과 의료광고의 공익적 측면을 훼손할 위험이 높으며 오히려 국내 의료기관의 환자몰이 경쟁만 야기하고 외국인환자 유치라는 정책취지는 몰각시킬 가능성이 큼.
- 위 개정안은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가 허용되는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제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허용장소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함

## 1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1) 법안개요

법안명 (의안번호)	제안 일자	대표 발의	주요내용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242)	2013. 10. 10.	김희국 (새)	가. 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 허가 및 신고 업무를 민간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위탁. 나.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제조허가와 제조인증으로 구분 (안 제6조 및 제15조) 다.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서 의료기기인증을 두 고, 의료기기 인증 및 신고 업무를 수행토록 함(안 제42 조, 제43조, 제44조)

### 2) 검토의견 : 입법 반대

#### 3) 주요 검토내용

- 결함이 있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체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여 사망이나 회복이 불가능한 심각한 장애나 기능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
- 최근 안전성 및 유효성 관련 기준에 미달되는 부정·불량 의료기기가 불법 유통되는 등 의료기기의 제조 등과 관련된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진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료기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 보호가 최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 개정안은 국민안전에 위협하는 법이자 의료영리화법임. 무엇보다 위해도 기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안정성이 요구되는 의료기기 허가사항을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며 의료기기 허가요건과 안전기준을 낮추려는 의료기기 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보임.

####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입법감시TF